

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(재)충북테크노파크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
되지 않음을 확립니다.

※ 채용 후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자격을 상실하며,
자동 면직은 물론 민·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결격사유

○ (재)충북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(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사람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
10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
11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12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사람

1호부터, ~ 8호까지, 해당자

20 년 월 일

확인자: (서명)

(재)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